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(2023. 11. 22. 공포 및 2024. 11. 23. 시행)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제6호의2)
-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(현행 제3조제1항 삭제)
- 건강진단결과서 등 발급 수수료를 3,000원으로 명시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2023년 11월 22일 제정되고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는 개정 완료하였고 21개 자치구가 건강진단 수수료를 3,000원으로 개정 추진 중으로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